

계약서(계획서)

분 할 계 획 서

주식회사 삼일씨엔에스

2022년 2월 14일

분할계획서

주식회사 삼일씨엔에스(이하 "분할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는 상법 제 530 조의 2 내지 530 조의 12 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이하에서 정의됨)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이하 "본건 분할")하여 주식회사 삼일산업(가칭, 이하 "삼일산업" 또는 "분할신설회사")을 설립하고, 분할존속회사는 주식회사 삼일씨엔에스로 상호를 유지하기로 한다.

제 1 조 분할에 관한 기본사항

1. 분할의 목적

(1) 분할회사는 영위하는 석산사업부문(석산개발, 골재 생산 및 판매업)을 의미하여, 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이라 함)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사업부문별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를 확립한다.

(2) 분할을 통하여 사업부문별로 핵심역량에 집중하여 사업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시장환경 및 제도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독립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무구조 개선, 수익성 증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극대화를 달성한다.

2. 분할의 방법

(1) 상법 제 530 조의 2 내지 530 조의 12 의 규정 및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여,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한다. 본건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비고
분할 존속회사	(주) 삼일씨엔에스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유가증권 상장법인
분할 신설회사	(주) 삼일산업	석산사업부문	비상장법인

(주 1)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주 2)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각 회사의 정관의 정함에 따름.

(2) 분할기일 2022 년 4 월 1 일 (0 시)로 한다. 다만, 분할존속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 2 조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중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6)항 내지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4) 분할회사는 상법 제 530 조의 3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530 조의 9 제 1 항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5)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인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존속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적, 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적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공통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사이에 배분하고, 계약이 특정 자산(주식 포함)에 관련된 경우에는 그 특정 자산의 귀속에 따른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 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다만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채무의 귀속에 대해 위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이사회가 그 귀속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른다.

(8)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본 조 제(7)항과 같이 처리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기로 한다.

(9)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며,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이외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분할일정

구 분	일 자
분할 관련 이사회결의일	2022년 02월 14일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2021년 12월 31일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2022년 03월 14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2년 03월 29일
분할기일	2022년 04월 01일
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	2022년 04월 04일
분할등기일	2022년 04월 04일

(주 1)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이나 분할회사의 사정 및 기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주 2) 분할보고총회 및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주 3)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음.

(주 4)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서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생략할 예정임.

제 2 조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방법

구 분	내 용
상호	국문명 : 주식회사 삼일산업
	영문명 : Samil Industry CO., LTD.
목적	[별첨 4] 분할신설회사 정관 참조
본점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충청북도 청주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충청매일신문에 게재한다.

2.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구 분	내 용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 주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액면주식

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구 분	내 용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00,000 주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수	기명식 보통주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액면주식

4.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존속회사에 100% 배정하고,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 및 준비금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자본금	1,000,000,000 원
준비금	9,423,312,866 원

(주 1) 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구성됨.

(주 2) 준비금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으며, 분할기일에 이전대상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함.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1)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적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이하 "이전대상자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2) 이전대상재산은 분할회사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분할계획서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 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분할기일까지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3) 분할기일 전까지의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 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4)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 중 분할신설회사가 귀속되는 부동산은 [별첨 3]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부동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5)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도록 상호 간에 정산 등을 실시하고, 협의를 통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진행하기로 한다.

(6) 분할 전·후 요약 재무구조 (2021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원)

구분	분할 전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I. 유동자산	127,825,321,213	123,471,296,182	4,354,025,031
II. 비유동자산	218,203,952,672	221,721,597,903	6,905,667,635
자 산 총 계	346,029,273,885	345,192,894,085	11,259,692,666
I. 유동부채	52,295,154,889	52,192,107,154	103,047,735
II. 비유동부채	19,090,711,780	18,357,379,715	733,332,065
부 채 총 계	71,385,866,669	70,549,486,869	836,379,800
I. 납입자본	12,731,947,000	12,731,947,000	1,000,000,000
II. 이익잉여금	187,793,239,575	187,793,239,575	-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74,118,220,641	74,118,220,641	9,423,312,866
자 본 총 계	274,643,407,216	274,643,407,216	10,423,312,866
부 채 와 자 본 총 계	346,029,273,885	345,192,894,085	11,259,692,666

(주 1) 상기 금액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까지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 2) 승계대상 재산목록은 분할계획서의 [별첨 2] 승계대상 재산목록을 참조하되, 해당 목록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8.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9. 분할을 할 날

분할기일은 2022년 4월 1일(0시)로 한다.

10.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에 관한 사항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다.

직명	성명	생년월일	약력
사내이사(대표이사)	장수현	1969.09.24	삼일씨엔에스 총주석산사업소장
기타비상무이사	강흥구	1966.04.20	삼일씨엔에스 경영관리본부장
기타비상무이사	장기철	1969.01.28	삼일씨엔에스 상무
감사	정진호	1968.02.03	삼일씨엔에스 경영기획담당

(주 1)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11.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은 [별첨 4] 분할신설회사 정관과 같으며, 정관 내용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제 3 조 분할존속회사에 관한 사항

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서 분할존속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은 감소하지 아니한다.

2. 자본감소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은 본 분할계획서 “제 2 조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의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의 내용에 따르되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 및 [별첨 2] 승계대상 재산목록을 준용한다.

4.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서 분할존속회사의 분할 후 발행주식총수는 변동이 없음.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주식의 수

해당사항 없음.

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4 조 기타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주주총회의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본 분할계획서는 2022년 3월 29일에 개최될 예정인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하여,

- (1)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 (2)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 (3) 그 동질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
- (4)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①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 ② 분할 일정
-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⑥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 ⑦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⑧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회사의 정관
- ⑨ 분할계획서의 각 별첨 기재사항
- ⑩ 기타 본건 분할의 세부사항

2.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본 회사분할은 상법 제 530조의 2 내지 제 530조의 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의 경우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채권자보호절차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4. 회사 간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

본 분할계획서의 실행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5. 근로계약관계의 이전과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취업규칙, 근로계약, 퇴직금 등 관련 법률관계 포함)을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한다.

6.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 받고,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각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이행한다.

2022년 2월 14일
주식회사 삼일씨엔에스
대표이사 정용근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

(단위 :원)

구분	분할 전	분할 후	
	2021-12-31	분할준속	분할신설
자산	346,029,273,885	345,192,894,085	11,259,692,666
유동자산	127,825,321,213	123,471,296,182	4,354,025,031
현금및현금성자산	16,574,590,491	13,573,476,418	3,001,114,07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44,762,909,214	44,647,324,514	115,584,700
기타금융자산	12,369,895,390	12,369,895,390	-
재고자산	44,779,948,195	44,305,133,201	474,814,994
기타유동자산	9,337,977,923	8,575,466,659	762,511,264
비유동자산	218,203,952,672	221,721,597,903	6,905,667,635
기타비유동자산	714,671,600	714,671,600	-
기타금융자산	6,157,645,442	5,909,448,572	248,196,870
기타투자자산	20,000,336,867	30,423,649,733	-
유형자산	186,230,773,717	179,573,302,952	6,657,470,765
무형자산	3,751,840,750	3,751,840,750	-
사용권자산	1,348,684,296	1,348,684,296	-
부채	71,385,866,669	70,549,486,869	836,379,800
유동부채	52,295,154,889	52,192,107,154	103,047,735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42,067,816,438	41,986,774,166	81,042,272
단기차입금	500,000,000	500,000,000	-
계약부채	7,550,874,939	7,550,874,939	-
기타금융부채	464,163	464,163	-
충당부채	1,005,703,463	983,698,000	22,005,463
미지급법인세	641,698,486	641,698,486	-
금융리스부채	528,597,400	528,597,400	-
비유동부채	19,090,711,780	18,357,379,715	733,332,065
기타채무	759,988,902	738,350,702	21,638,200
장기차입금	10,000,000,000	10,000,000,000	-
순확정급여채무	(203,279,448)	(195,382,612)	(7,896,836)
충당부채	549,594,675	-	549,594,675
이연법인세부채	7,117,331,673	6,947,335,647	169,996,026
금융리스부채	867,075,978	867,075,978	-
자본	274,643,407,216	274,643,407,216	10,423,312,866
자본금	12,731,947,000	12,731,947,000	1,000,000,000
자본잉여금	80,568,968,601	80,568,968,601	9,423,312,866
자본조정	(6,450,747,960)	(6,450,747,960)	-
이익잉여금	187,793,239,575	187,793,239,575	-
부채 및 자본	346,029,273,885	345,192,894,085	11,259,692,666

[별첨 2] 승계대상 재산목록

구분	계정과목	분할신설회사
유동자산	계	4,354,025,031
	현금및현금성자산	3,001,114,07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15,584,700
	재고자산	474,814,994
	기타유동자산	762,511,264
비유동자산	계	6,905,667,635
	유형자산	6,657,470,765
	장기대여금	248,196,870
유동부채	계	103,047,735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81,042,272
	복구충당부채(유동)	22,005,463
비유동부채	계	733,332,065
	기타채무	21,638,200
	순확정급여채무	(7,896,836)
	이연법인세부채	169,996,026
	복구충당부채(비유동)	549,594,675

[별첨 3] 승계대상 부동산목록

순번	구분	지번	면적(m ²)	비고
1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31	658	
2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산 44	51,570	
3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산 58	334,903	
4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산 54	9,917	
5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산 55	11,107	
6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산 43-2	109,091	
7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38	4,426	
8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45-2	53	
9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49-1	787	
10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36	109	
11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37	668	
12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42	215	
13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276-1	1,138	
14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43	1,471	
15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44	142	
16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45-1	96	
17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46-1	261	
18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46-2	374	
19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47	893	
20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산 53-1	71,284	
21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산 52-1	111,868	
22	토지	충북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산 157	10,711	
23	토지	충북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산 160	63,471	
24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34	1,901	
25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35	155	
26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41	1,805	
27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49-2	1,180	
28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32-1	268	
29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32-2	317	
30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29-3	2,757	
31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28	691	
32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277-2	159	
33	토지	충북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산 23	23,802	

34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17-1	1,183	
35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22	413	
36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23	1,190	
37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07	452	
38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07-1	173	
39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482-1	1,347	
40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484	1,864	
41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02	1,263	
42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산 48	34,919	
43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19-1	8,141	
44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24	545	
45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25	985	
46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19-3	868	
47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19-4	953	
48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19	3,445	
49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18	380	
50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26	1,018	
51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27	1,250	
52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06	1,878	
53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30	545	
54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33	714	
55	건물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쇠실로 595-46	379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 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삼일산업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Samil Industry CO., LTD.라 한다.

제 2 조 목 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광산 개발업 및 판매업
2. 토목 및 건축공사업
3. 석산개발
4. 골재 채취업
5. 골재 판매업
6. 부동산 개발업
7. 부동산 임대업
8. 건설기자재 제조업
9.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10. 부동산의 임대차 관리업
11. 시설물 유지 관리업
12. 기타 전기 사항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제 3 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1. 이 회사는 본점을 충청북도 충주시에 둔다.
2.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또는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의 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충청북도 청주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충청매일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500,000 주로 한다.

제 6 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수는 100,000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 9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9조의2 주식의 소각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다만, 해당 사업년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내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 회사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 10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①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①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5.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6.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7.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1. 이 회사는 임. 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 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 직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②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6.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 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③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④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0 조의3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 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 1.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3.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1.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 부터 1월 15일 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2.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3.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3 조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 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4 조 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4 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1.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①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②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5.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 조의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1.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①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②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16 조 소집시기

1.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7 조 소집권자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 30조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 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 19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0 조 총회의 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 30조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1 조 의장의 질서 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2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3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 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5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제 26 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

1.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개정상법 제409조 제4항 자본금 10억 미만일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7 조 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8 조 이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 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29 조 이사의 보선

1.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제 31 조 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0조 및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1 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1.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2 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회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사회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4.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하고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른 수시로 소집한다.

제 33 조 이사회 결의방법

1.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2.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34 조 이사회회의 의사록

1. 이사회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5조 감사의 선임

1. 이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2.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6 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7 조 감사록

1.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8 조 이사와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계 산

제 39 조 사업 연도

이 회사의 사업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0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1.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결산기말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회의 승인을 받아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대차대조표
 - ② 손익계산서
 - ③ 그 밖의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2.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5.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1 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2 조 이익배당 및 분기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또는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이 회사는 사업연도 중 3월, 6월 및 9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서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또는 분기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2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 신주에 대한 분기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43 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제 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을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회사가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시행범위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 3 조 분할에 의한 회사 설립

이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분할전 주식회사 삼일씨엔에스의 분할로 인한 이전되는 재산, 그 가격과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분할 전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제 4 조 최초 사업연도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이 정관 제3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 설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주식회사 삼일산업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쇠실로 595-46
대표이사 장수현